

□ 변경 대비표

2016년 9월 26일

◆ 해당 집합투자지구 :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집합투자계약 - ①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② 보수 인하 ③ 기타사항 보완

항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1. ~ 6. <생략> 7. <신설>	1. ~ 6. <생략>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① <생략>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신설> ③ <신설>	① <생략>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종류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종류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종류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5.종류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지구 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6.종류Ci 수익증권 :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종류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8.종류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p>권</p> <p>9.종류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10.종류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11.종류S-P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제8조 (신탁금의 납입)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신설>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신설>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신설>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제9조 (수익권의 분할)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신설>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A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2. 종류A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 3. 종류C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형] 4. 종류C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 5. 종류Cw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w형] 6. 종류Ci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i형]

		<p>② ~ ⑤ <생략></p>	<p>7. 종류C-P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P형] 8. 종류C-P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Pe형] 9. 종류C-P2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P2형] 10. 종류S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S형] 11. 종류S-P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S-P형]</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제25조(판매가격)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27조(환매가격)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신설>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신설>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해 기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해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p>

		<p>가격 및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신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33조(이익분배)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신설>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p> <p>②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p> <p>② <생략></p>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p>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신설>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설>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제39조(보수)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및 보수 인하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신설> 수익증권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5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5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A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A형]</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2. 종류A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3. 종류C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형]</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4. 종류C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5. <u>종류Cw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w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6. <u>종류Ci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i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7. <u>종류C-P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P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8. <u>종류C-Pe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Pe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9. <u>종류C-P2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P2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10. <u>종류S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S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7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p>11. <u>종류S-P 수익증권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S-P형]</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형 수익증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

	<p>권으로의 전환</p>	<p>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신설></p> <p>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p>④ 판매회사가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해야 한다.</p>	<p>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종류 A수익증권 : 0.70% 이내</p> <p>2.종류 Ae수익증권 : 0.35% 이내</p> <p>3. 종류 C,Ce,Cw,Ci,C-P,C-Pe,C-P2,S,S-P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③ <u>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1. 종류 S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 <u>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u></p> <p>⑥ <u>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문구 보완</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소각</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소각</p> <p>2. 매도</p>
<p>부칙</p>		<p><신설></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 적용한다.</p> <p>제2조(기존 수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신탁계약 시행당시 종전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제3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p>

◆ 투자설명서 - ①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② 기타사항 보완

항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신설>	A, Ae, C, Ce, Cw, Ci, C-P, C-Pe C-P2, S, S-P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가.~라. <생략> 마. 특수형태 : <신설>	가.~라. <현행과 같음>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 추가형, 개방형, <신설>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u>종류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u>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u>종류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i 수익증권 :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종류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u>

			<p><u>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u>종류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u>종류S-P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5) 선취판매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인하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0.80% 이내로 이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영업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0.70% (A형) 이내, 0.35% (Ae형) 이내 로 이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영업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생략>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생략>	<신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사항 추가	<신설>	<신설>

◆ 간이투자설명서 - ① 투자자 유의 사항 및 주요 투자위험 문구 강화 ② 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③ 기타사항 보완

항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 사항 및 주요 투자위험 문구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1. 투자자 유의사항</p>	<p>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u>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u>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3. 분류</p>	<p>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p>	<p>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신설></p>	<p>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p>
<p>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8. 가입자격</p>	<p>종류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p>	<p><신설></p>	<p>A, Ae, C, Ce, Cw, Ci, C-P, C-Pe C-P2, S, S-P 종류 중 A, C형의 보수·비용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전체 종류에 대한 사항은 정식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6. 주요 투자위험</p>	<p>주요 투자위험 보완</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u>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u>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제4부 요약 재무 정보</p>	<p>재무정보 생략</p>	<p>제1기 요약 재무제표</p>	<p><u>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u></p>

